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5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김대식 · 김용태 · 안철수
김선교 · 박덕흠 · 서지영
서일준 · 김위상 · 김준혁
나경원 · 추경호 · 정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인력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필수의료, 기초의학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교육에 대하여 교육부와의 협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도입 및 기초·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

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채용지원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를 “면허·자격관리·학교 교육·수련·보수교육 및 연수”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건의료인력의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공지능(「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초의학(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면역학 등 의학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또는 필수의료(진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로서 지역과 시간에 관계 없이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분야를 말한다) 전공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 취업연계 등 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u>.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건의료인력의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면허·자격관리·학교교육·수련·보수교육 및 연수</u> -----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
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
다.

1. ~ 3. (생략)

<신 설>

자질향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인공지능(「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
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공지능을 말한다)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기초의학(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면역학 등 의학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또는 필수의료(진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로서 지역과 시간에 관계 없이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분야를 말한다)

② · ③ (생 략)	<u>다) 전공 보건의료인력 확보</u> <u>를 위한 장학금, 취업연계 등</u> <u>지원사업</u> ② · ③ (현행과 같음)
-------------	--